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9.12.3.)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건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를 받을 수 있는 재외 한국학교에 대한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를 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비지원 요건 및 절차 정비(안 제18조의2 신설)

1)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재외 한국학교의 요건을 명시하고 학비 지원 절차를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24.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이하 “학비”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1. 소재국 정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2. 제1호의 자격 확인이 어려우나 가구소득, 재산, 가정상황 등이 학교
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②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학비 지원액 산출에 필요한 학생 수, 수업료 및 입학금, 전년도
수업료 납부현황, 학생의 가정상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되, 수업료 및 입학금, 거주 지
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이하 “학비”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1. 소재국 정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2. 제1호의 자격 확인이 어려우나 가구소득, 재산, 가정상황 등이 학교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 ② 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학비 지원액 산출에 필요한 학생 수, 수업료 및 입학금, 전년도 수업료 납부현황, 학생의 가정상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되, 수업료 및 입학금,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796